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4가단534787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블랙앤화이트프로덕션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2. 4.

판결 선고2016.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4,375원과 그 중 84,495,557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5. 2. 14.까지 연 12%, 2015. 2.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6. 6. 28.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간 2007. 6. 27.까지 (2014. 6. 20.까지 연장), 구상금에 대한 지연이율과 비용 등은 원고 기금이 정한 내용에 따르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 청담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3. 8. 31. 폐업함으로써 원고는 2013. 10. 28. 기업은행에게 86,089,4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대위변제 후 원고가 회수한 1,593,912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786원, 보전조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39,032원이다.

1,016,160	2013-10-28	2013-10-28	1	12	334
505,533	2013-10-28	2014-9-2	310	12	51,522
72,219	2013-10-28	2014-9-26	334	12	7,930
총계	59,786				

바. 원고 기금이 정한 지연이율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794,375원(= 대위변제금 86,089,469원 - 회수금 1,593,912원 + 확정손해금 59,786원 + 대지급금 239,03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4,495,5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2. 14.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2015. 2. 15.부터 2015. 9. 30.까지 2015. 9. 25. 개정되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20%, 2015.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경희